



평등 주택 공급 기회

연방 공정 주택법 준수

(공정 주택법 개정안 1988)

인종, 피부색, 종교, 성별, 장애,
가족 관계, 출신 국가 등의 이유로
개인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

■ 주택 또는 주거 영역의 매매 또는 임대

■ 부동산 중개 서비스 규정

■ 주택 매매 또는 임대 광고

■ 주택 감정

■ 주택 구입자금 조달

■ 블록버스팅 또한 불법입니다

자신이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될 경우
주택 차별에 관한 민원을 다음 번호로
접수할 수 있습니다.

1-800-669-9777 (무료 전화)

1-800-927-9275 (TTY)

**U.S. Department of Housing and
Urban Development**

**Assistant Secretary for Fair Housing and
Equal Opportunity**

Washington, D.C. 20410